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BL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화성시 화성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ynn.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제출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동반1인)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장구점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방문일정은 주후 안내 예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동반1인 포함)에 한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1-266-1800](tel:031-266-18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2020.06.17. 발표된 국토교통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2020.06.19.일부터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1호에 따라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도 청약이 가능하나 화성시에 1년 이상(**2020.04.16.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2020.10.16.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조본상 밀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 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고양시 등에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약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등일국가 재출국 시 계약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활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면,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별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검본주택 또는 은행 청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yn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의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동·호수 배정 후 미계약시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구분없이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

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의 2 및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 2에 의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처벌됨.(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입주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인공인증개사에 대해서도 「개인증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당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021.04.26.(월)	2021.04.27.(화)	2021.04.28.(수)	2021.05.04.(화)	2021.05.07.(금) ~ 2021.05.14.(금)	2021.05.16.(일) ~ 2021.05.19.(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6:00)	(09: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창구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 - 16876호(2021.04.16)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지구 B-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12개동, 지하 1층, 지상 10~15층, 총 650세대
[특별공급 376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6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m ²)					세대별 대지 지분 (m 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제 총 우선 배정 세대 수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일반 (기관 추천)	디자녀	실흥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소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주차장												
민영주택	2021 000273	01	084.9927A	84A	84.9927	27.6406	112.6333	4.6278	44.5787	161.8398	73.1185	218	22	22	44	7	33	128	90	16	
		02	084.8635B	84B	84.8635	27.5362	112.3997	4.6207	44.5110	161.5314	73.0074	216	22	21	43	6	32	124	92	16	
		03	084.8580C	84C	84.8580	27.5727	112.4307	4.6205	44.5081	161.5593	73.0026	216	21	22	43	6	32	124	92	16	
합계											650	65	65	130	19	97	376	274	48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m²)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총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종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1-08-13	2021-11-15	2022-02-15	2022-06-15	2022-09-15	2022-12-15	
84A	218	5층 이상	156	120,766,000	268,734,000	389,500,000	39,00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116,800,000
		4층	16	120,766,000	260,834,000	381,600,000	38,20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40,000
		3층	16	120,766,000	249,534,000	370,300,000	37,10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111,020,000
		2층	16	120,766,000	237,834,000	358,600,000	35,90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40,000
		1층	14	120,766,000	229,734,000	350,500,000	35,10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105,100,000
84B	216	5층 이상	156	120,582,000	268,918,000	389,500,000	39,00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116,800,000
		4층	16	120,582,000	261,018,000	381,600,000	38,20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40,000
		3층	16	120,582,000	249,718,000	370,300,000	37,10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111,020,000
		2층	15	120,582,000	238,018,000	358,600,000	35,90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40,000
		1층	13	120,582,000	229,918,000	350,500,000	35,10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105,100,000
84C	216	5층 이상	156	120,573,000	268,927,000	389,500,000	39,00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116,800,000
		4층	16	120,573,000	261,027,000	381,600,000	38,20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40,000
		3층	16	120,573,000	249,727,000	370,300,000	37,10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37,030,000	111,020,000
		2층	15	120,573,000	238,027,000	358,600,000	35,90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40,000
		1층	13	120,573,000	229,927,000	350,500,000	35,10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105,10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 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총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총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은 원활히 수분양자가 계약체결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 대출신청 일정등은 별도안내 예정)

-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자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발생함)
- 화성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중도금 대출비율이 공급금액의 50%로 제한되며, 공급금액 10%는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927A	084.8635B	084.8580C
건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북한이탈주민	3	4	10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4	3	11
	장기복무 재대 군인	3	4	1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3	10
	중소기업근로자	4	4	12
	장애인	4	4	12
소계		22	22	6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2	21	65
신혼부부 특별공급		44	43	1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6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33	32	97
합 계		128	124	3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당첨자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p> <p>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 </tr> <tr> <th>구 분</th> <th>화성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됨.(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시 청약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여,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충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충복 청약 시 물량을 다 무효처리 됨.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돈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

- 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에서 낙첨 시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출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출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출신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출신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출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등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 수의 20% 범위) : 13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고 그 기간에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이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격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함.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자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기타 본 공고장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호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 또는 2018.12.11.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인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인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50%)순으로 우선 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함.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총액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7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 160%이하인 자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1년 이상)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안]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 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족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자족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정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자족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망. • 주민등록표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준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에게 공급함 * 민영주택 추첨제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준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준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견인을 받아야 하고,

<p>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p> <p>(단,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경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종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을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자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주택청약종합자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청약종합자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자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자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화성시 (화성시 1년이상 계속거주) / 경기도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거주) /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6개월 미만)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방법 : 가점제 75%, 추첨제 25%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자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준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에게 공급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자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은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8세 이상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임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거주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출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출신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직계존속 - 내국인의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출생자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6(월) (청약종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종” 검색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일반공급	1순위	2021.04.27(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종” 검색	•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4.28(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종” 검색	• 대행은행 창구(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면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유효한 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간신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우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빗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빗자리 포함)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임주자모집공고일 2021.04.16.)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중(임주자모집공고일 2021.04.16.)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세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시 견본주택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사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국康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시 견본주택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천양지임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발급처:해당 직장 / 세무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본인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	5개년도소득세 납부내역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금액증명원(교로지정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확인하여, 소득산정시당첨자외기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1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미만은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어린 청소년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예수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추서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증(본인발급용), 단·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 신청자의 척도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부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	기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접수를 산정한 경우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		직계존속	• 2021.04.1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약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자격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및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육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개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첫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첫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부적격 동첨 통보를 받은 자	○	출입국 시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우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기록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험거예경증명서 • 소형·자기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우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 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퍼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을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퍼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감증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퍼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율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본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통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과거5개년도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또는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1년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5개년도 소득세납부증명서로아래에 해당하는 서류중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또는종합소득금액증명제출자에한함) •납부내역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또는일용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해당직장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줄수있도록,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등의 원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등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척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척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증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6.) 현재 환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 5%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의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우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입주자 선정 시 선정 대상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등을 전산 검색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낸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지묘)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예비입주자 자위가 인정됨.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제57조 제8항 따름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따름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VI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5.04.(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5.07.(금) ~ 05.14.(금) 장소: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개별통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5.16.(일) ~ 05.19.(수) (09:00 ~ 17: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하여 서류심사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별도의 일정을 통지받아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방문을 제한 할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의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이며,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04.(화) ~ 2021.05.13.(목) (10일간)
인터넷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자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년 05월 04일(화)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1.05.16(일) ~ 05.19.(수) (4일간, 09:00 ~ 17: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031-266-18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신분증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 필수))
	○		인감도장(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비치)
	○		위임장(계약자)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부적격당첨자가 단순착오 기재 사실임을 소명하고 계좌부활을 요청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이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지역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들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광주은행	1107-021-127945	아시아신탁(주)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당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당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일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일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

- 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3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함.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1-08-13)	잔금 (입주 시)	비고
84A	2,510,000	300,000	300,000	1,910,000	
84B	2,570,000	300,000	300,000	1,970,000	
84C	1,410,000	200,000	200,000	1,01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미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걸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충통, 선충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상하부에 피난용 사다리가 설치됨(1~3층에는 피난용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에는 철재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1-08-13)	잔금 (입주 시)	비고
전주택형	3대	거실, 안방, 주방	5,5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삼성전자
	5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8,500,000	1,000,000	1,000,000	6,5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박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추가선택 개별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품 목		84A	84B	84C	비 고
가구	현관창고	1,000,000	1,000,000	1,000,000	
	고급주방 특화	2,600,000	2,600,000	2,600,000	엔지니어스톤 주방상판, 벽부 고급수전, 사각 석크볼
	주방 펜트리	1,500,000	1,500,000	1,500,000	
	아일랜드장	1,200,000	1,200,000	1,200,000	
	냉장고장	800,000	800,000	800,000	
	냉장고장(인출식 수납장)	700,000	700,000	700,000	냉장고장 선택시 추가선택 가능
	주방 장식장	1,300,000	1,300,000	1,300,000	
	안방 드레스룸(화장대포함)	2,800,000	2,800,000	4,500,000	
	침실 불박이장(1개소당)	1,100,000	1,100,000	1,100,000	침실1,2 선택가능함
가전	광파오븐	LG(기본형)	400,000	400,000	
		LG(고급형)	1,000,000	1,000,000	
	인덕션	삼성	700,000	700,000	
		쿠쿠	700,000	7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1개소)	500,000	500,000	500,000	부부욕실

· 인테리어 패키지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항 목	84A	84B	84C	비 고
주방 패키지	고급주방특화, 주방펜트리, 아일랜드장 냉장고장, 주방 정식장	6,700,000	6,700,000	6,700,000	
가구 패키지	현관창고, 침실1 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화장대포함)	4,400,000	4,400,000	5,900,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미선택시 설치되는 양변기는 투피스양변기로 시공됨
- 고급주방특화 미선택시 상판은 MMA, 벽부는 타일, 사각싱크볼은 일반형 싱크볼, 고급 수전은 일반 수전으로 시공되며, 주방 아일랜드장 상판은 MMA(옵션 선택 시)로 시공됩니다.
- 해당타입의 안방드레스룸 및 불박이장 미선택시 벽면마감은 벽지로 시공됨
-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시 일반도배 마감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강액하여 반영된 것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비 확장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선택품목(엔지니어드스톤, 주방 팬트리, 냉장고장, 주방 아일랜드장, 주방정식장, 안방드레스룸)은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 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인테리어 패키지는 추가구성 개별품목 중 일부품목을 조합한 패키지 옵션임을 인지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및 인테리어 패키지 납부방법

납부계좌 및 예금주			납 부 일 정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1-08-13)	잔금(입주기정일)
1107-021-127973	광주은행	아시아신탁㈜	10%	10%	80%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 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공동주택マイ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문	각 목문들(사출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자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목슬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목실문들 하부씰, 방화문들 및 문짝, PL창호
II	바닥	마루, 결례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거울,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볼트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볼트(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III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IV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돌딩포함)	천정들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 클러버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목실제외)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 · 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자동식소화기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 · 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VII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V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 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 원, VAT 포함]

주택형(㎡)	84A	84B	84C	비 고
금 액	30,141,000	30,079,000	30,087,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선택 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에 의한 구조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 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기준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 설치시 반드시 자동식소화기가 설치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시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련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하여 당첨이후 사전서류접수기간 동안 당첨자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찰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일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동부분 시설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명칭 및 등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강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p>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종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을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②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③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④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⑦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⑧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⑨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신청 시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하 「소형·저가주택등」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강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는 단지 낭서측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정약 및 계약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사입지 주변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방음벽 설치 요구를 할 수 없음.
주변환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지에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준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지구의 입주학생에 대해서는 원거리통학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후 버스노선 개설 요청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예정임 화성지역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가장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이며,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입주시기에 따른 고등학생 배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바,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황후 개발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과 재협의 예정임 본 사업지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태안3지구 내 학교 설립을 통해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나, 학교설립 시기는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설학교 설립 시기까지 초등학생은 안성초등학교에, 중학생은 기안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임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지구단위 개발계획 변경 등 환경변화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가 필요하며, 재협의시 동 요건 및 주변여건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낭서측, 북서측에는 도로가 위치하며, 낭서측, 낭동측에는 공동주택용지, 서측에는 근린공원 및 종교부지, 북측에는 단독주택부지, 동측에는 하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업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둘째,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모형도 및 카탈로그 등 충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등이 변경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근린공원, 체육공원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택지지구 준공완료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람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행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접,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을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음.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둑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흉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인 종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혈교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내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사항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권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비에치금을 예치하여야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도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끼리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의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사업구역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도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 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본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주거공용 부분인 전실 및 출 등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점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에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일부도서에 한해 확인 가능함)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탈레이터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관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을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단지 내 비상차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비상차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응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울목,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이동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내새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일부동에 우수활용시설이 설치되며, 우수재활용을 통한 공동부위에 사용도록 할 예정임. 엘리베이터 출입은 각 세대간 공동하는 공동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가 설치될 예정임.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 108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3동, 107동, 109동, 111동 옥상면 및 화단 등 지상 일부구간 103동, 107동, 111동 등 통통신설비 등 동지하 및 지하주차장 일부구간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설, 발전기설, 전기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경관조망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상, 단지명칭, 등 표시 등을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식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하시는 계약자는 허가 기준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중 공정, 현장여건, 주변환경,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최초의 기준과 최종 시공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집의 허가여부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돌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일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디자인지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균린생활시설 냉, 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재연판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출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균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해당동 1층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꼭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행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난방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으로 세대별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별로 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됨.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힌들이 떨어질 수 있음.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서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굽도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배수 트レン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훈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유효천정고는 지하1층 2.7m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유효천정고는 변경될 수 있음.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차 위치·개소·사양은 달라 질 수 있음.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주민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전기실, 발전기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입주민회의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전기실, 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균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외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종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임설자)가 관리함.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시설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족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평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수 있음.
공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작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내측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률 마감계획에 따라 조작으로 시공될 수 있음)

	1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해당 저층부는 낭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측 문주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1,2호 라인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 예정이나,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1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동측 문주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1호 라인 우측에 DA가 설치되어 인근세대는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3,4호 라인 1층에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 속도 및 인승이 상이할 수 있음
	10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 속도 및 인승이 상이할 수 있음 남서측에 어린이집 위치하여 일조, 조망,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06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서측에 어린이집 위치하여 조망,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07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서측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108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호 라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카페(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임.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해당 저층부는 낭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측 문주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 예정이나,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109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남측 단지외부에 버스베이 및 도로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1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11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호 라인 1층 필로티에 게스트하우스 및 동출입구가 함께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남측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 속도 및 인승이 상이할 수 있음 북동측 단지 외부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홈페이지, 품플랫,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임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임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실외기실 출입문은 일반철재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실외기실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4~최상층까지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탑입별로 실외기실 너비가 다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방에 의거 3~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육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해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및 타입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찾으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미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사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애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설치됨.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상태로 시공되어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등이 설계도면과는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유상옵션 품목의 선택에 따라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임.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출구, 운도조절기(견본주택 미설치),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당사에 적용된 공기질관리통합시스템, 미세먼지 센터 알림시스템(부대시설) 이용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 동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 이용시 사용요금이 발생되어 공동전기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청정공기 급배기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동출입구 공기청정 시스템의 해파필터는 추후 교체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애어클린 시스템은 실제 설치와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적응 아이템은 특성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색채계획 및 외부마감에 따라 별도 지정될 예정임 (현재 견본주택에 시공된 외부창호 프레임은 유색, 백색으로 시공되었으며, 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됨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창호 프레임(실외기설 그릴 포함) 색상은 색채계획 및 외부마감에 따라서 별도 지정될 예정임.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미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 22mm일면으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미확장부위의 안방발코니 22mm 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에 22mm일면으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주방발코니는 외측에 22mm일면으로이복층유리 이중창, 내측(발코니2(보조주방))에는 ABS문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발코니 내측에 22mm일면으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미확장 시 발코니 확장 선택시 및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의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를 개인이 직접 확장하거나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조리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하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하부층의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미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별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주었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재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사이버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 반영하여 시공되어 있으니, 기본확장형 및 미확장의 경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옥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을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확장형(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충보율상 조강도, 사진 등을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함(철거 후 견본주택 내부를 활용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활용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활용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강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이며 본 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강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및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서류접수 기간내 당첨자에 한하여 가능)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함. 모형도상에 표시된 옥상 및 단지 난간은 철재난간으로 시공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사이버 모델하우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돋기 위해 활용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을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활용한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선택형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을 안·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 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령,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축소될 수 있음.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축소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흘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에는 온도조절기 미설치),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견본주택 거실 및 주방, 복도 바닥에 시공된 타일은 연출용으로 선택하실 수 없으며, 본 시공 시 강마루로 설치됨
계약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X 기타 사항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사항 없음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규정

분양가 삼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이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액자비 (4)	택지공급가격	67,418,760,000	건축비 (58)	철근콘크리트 공사	31,313,574,620	기계 설비 (9)	위생기구설비공사	954,012,610
	기간이자	1,414,135,757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498,608,380
	필요적 경비	4,114,695,698		조적공사	1,819,355,440		가스설비공사	484,060,390
	그 밖의 비용	5,468,876,545		미장공사	2,221,137,980		자동제어설비공사	154,128,260
	토공사	2,601,581,960		단열공사			특수설비공사	96,400,200
	흙막이공사비			방수·방습공사	1,164,227,180		공조설비공사	726,149,810
	비탈면보호공사			목공사	2,883,071,180		전기설비공사	5,102,722,480
	옹벽공사	422,514,880		가구공사	2,613,868,840		정보통신공사	4,724,518,830
	석축공사			금속공사	725,146,330		소방설비공사	4,287,941,820
	우수·오수공사	668,981,890		지붕 및 흙동공사	794,851,210		승강기공사	1,535,785,450
건축비 (58)	공동구 공사			창호공사	4,653,108,850	그밖 의 공종 (4)	일반관리비	8,516,567,96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유리공사	1,208,849,400		이윤	9,115,819,310
	도로포장공사	668,981,890		타일공사	2,205,574,660		설계비	1,088,100,0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돌공사	254,876,180		감리비	2,683,356,740
	정화조시설공사			도장공사	1,064,058,830		일반분양시설 경비	6,551,468,910
	조경공사	4,832,562,280		도배공사	823,506,680	간접비 (6)	분담금 및 부담금	5,817,569,330
	부대시설공사			수장공사	1,464,011,880		보상비	
	공통가설공사	3,551,824,240		주방용구공사	1,742,579,220		기타 사업비성경비	16,654,497,622
	가시설물공사	1,090,684,710		잡공사	6,319,237,110		그밖의 비용(1)	17,387,453,588
	지정 및 기초공사	1,520,734,760	기계 설비 (9)	급수설비공사	2,187,307,240		합계	248,892,800,000
	철골공사			급탕설비공사	1,913,893,840			
				오래수설비공사	1,367,067,030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BL

- * 상기 택지비 항목중 그 밖의 비용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거한 가산항목 중 흙막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건축비 항목중 단열공사비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등에 해당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 축	㈜삼우씨엠건축사무소	2,056,703,000	부가세 포함
전 기	㈜유일방재엔지니어링	403,302,403	
소방 / 통신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85,0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화성 태안3지구 B1블록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174,257,480,000	02412021-101-00002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 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경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법인명	(주)대경피애프브이	대경건설(주)	우미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7564340	191111-0021621	205211-0001385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경남-주대2001-0013	전남-주택2004-003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31-266-18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9	www.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미린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운영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당첨자(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 및 계약기간 내 한시적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